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6-397호

# 2026년 제6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 심사원(가급Ⅰ 임상심사위원, 일반) 채용공고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'심사원'을
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6년 11월 17일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## 1. 채용예정인원

### □ 채용 개요

○ 채용인원: 총 4명

- 일반 전형(4명)

| 분 야 | 부 서 | 직종 및 등급 | 인원 |
|---|---|---|---|
| 의약품 | 임상심사과 | 심사원(가급Ⅰ, 임상심사위원) | 4명 |
| 합 계 | | | 4명 |

○ 담당업무

| 구분 | 부 서 | 등급 | 인원 |
|---|---|---|---|
| 의약품 | 임상심사과 | 가급Ⅰ | ○ 임상시험계획서 심사,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임상결과보고서 자문 검토 등 |

※ 담당 예정 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, 그 외에 「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」상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음

## □ 자격 요건

### ○ 분야별 및 등급별 자격요건

| 구분 | 등급 | 근무지역 | 자격요건 |
|---|---|---|---|
| 의약품 | 심사원 가급Ⅰ (임상심사 위원) | 충북 청주 오송 (평가원) 또는 경기도 과천 (정부과천청사) | ◦ 전문의 자격증 소지한 자<br>- 임상시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우대<br>- 내과 전문의, 임상약리 전공자 우대<br>◦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0년 이상 임상시험 분야의 경력 연구실적이 있는 자 |

### ○ 공통사항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*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***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 ○ 우대사항

-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
* 장애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응시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)

* 저소득층의 범위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-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인증시험 합격자

## 2. 보수 및 근무조건

### □ 근무 조건 등

○ **신　　분:**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

○ **근무기관:** 다음 장소 중 택일 가능

-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임상심사과
  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- 정부과천청사 내 임상심사과 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)

*** 지원 서류 중 자기소개서 마지막에 희망 근무지역 표시**

* 서울 등 원격근무가 가능하며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(전보)에 따라 향후 필요 시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될 수 있음

○ **계약기간**

- **일반 전형**: 채용계약일*부터 ~ 2026년 12월 31일까지

* 합격자 최종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.

** 식약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(12.31.)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으며,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**매년 재계약 진행**

○ **근무시간:** 주 40시간

* 육아시간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 제공 (식약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참고)

* **근무일수 및 시간 조정 가능**, **재택근무** 등 유연근무 활용 가능

○ **보수수준:**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」에 따름

| 구　　분 | 월 기본급 |
|---|---|
| 가급Ⅰ<br>(임상심사위원) | 8,500,000 ~ 10,000,000원 (연봉 102,000 ~ 120,000천원) |

* 급식비(월 16만원)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시) 별도 지급

*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*** 복리후생: 장기근속자 수당, 사내동호회, 우수직원포상, 맞춤형복지포인트, 체육시설, 의무실, 카페테리아, 사내외국어강좌 운영(자기부담금)

## 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### ○ 제출서류
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공통 서류<br>(필수제출) | 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<br>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<br>-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붙임1)<br>-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붙임2)<br>-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붙임3)<br>-주민등록초본(남녀 공통,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것)<br>-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<br>***석·박사 수료 및 수료예정 증명서 미인정**<br>-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<br>***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**<br>-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|
| 선택 서류<br>(해당자 제출) | -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<br>-어학성적서<br>-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(운전면허 제외) |

### ○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

  * 학력증명서,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**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**로 제출

  **※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**

  *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, 휴직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(구체적으로 기재)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

  ※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- 학력·자격 등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,

경력은 공고마감일까지 인정하여 심사

○ **면접심사 주의사항**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
○ **채용일정**

- 접수기간 : 2026. 11. 17.(화) 18:00 ~ 2026. 12. 01.(화) 23:00
-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http://employ.mfds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- 시험방법 및 일정

| 시험방법 | 시험(예정)일자 | 시험장소 | 합격자 발표 / 장소 |
|---|---|---|---|
| **서류전형** | '26. 12. 3.(목) 예정 | - | 개별 통보 |
| **면접시험** | '26. 12. 10.(목) 예정 | 별도 통보 | 개별 통보 |
| **최종발표** | 추후 결정 | - | 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 |
| **근무시작일*** | '27년 1월 예정(협의 가능) | - | 변동 가능 |

* 합격자 최종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함.

※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일자가 변경될 수도 있음

※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음.

## 4. 기타사항

○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아래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*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**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○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개인 사정으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별도의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신원조회 ·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(※문의 : 평가원 임상심사과 채용담당자 ☎043-719-5167)

## 5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○ 기본증명서 1부

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○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 제출)

*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

○ 최종학력증명서 1부

○ 통장사본 1부

○ 신원진술서(약식) 1부

○ 반명함판 사진 2매, 흰색 바탕 사진 파일 제출

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 * 472픽셀)

○ 장애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##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#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(제17조제1항 관련)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하고자 합니다.

☐ [필수]기본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-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성명, 국적, 주소, 생년월일, 연락처, 계좌은행, 계좌번호, 전자우편주소, 학력, 학위, 수상실적, 경력·재직사항, 가족사항, 차량번호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급여지급,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·복무 기록관리, 청사출입관리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

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민감정보 수집・이용 내역

|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| 수집·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국가유공자정보, 장애정보, 북한이탈주민정보 |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, 법적사무처리 |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|

**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・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☐ [필수] 기본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내역

| 수집·이용 항목 | 수집.이용 목적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주소 |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|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|

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・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
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※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26 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**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**

## 붙임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(제24조제2항 관련)

**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**상 **비위면직자등**은 **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**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**형사처벌**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**해임요구**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**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**

| | |
|---|---|
| 1. **공직자**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<br>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<br>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2. **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**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br>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<br>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br>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br>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br>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<br>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3-1. **해당 부패행위**로 **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**된 사실이 있는지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3-2. 위 **퇴직일**(당연퇴직 · 파면 · 해임일)로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<br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4-1. 해당 부패행위로 **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**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4-2. 그 형의 **집행이 종료된 날**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**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**(5년 내)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<br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 | 해당 □<br>비해당 □ |
| 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| 해당 □ |
| 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| 해당 □ |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6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 지 원 자 (서명)

## 붙임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(제24조제1항 관련)

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」제23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**식품의약품안전처장(또는 소속기관의 장) 귀하**

## 붙임 4 서류심사 배점 (서류합격자 3배수 이상 제한시)

| 심 사 항 목 | | 배점 | 심사항목별 배점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상 | 중 | 하 |
| 자기소개서<br>(직무적합성, 내용충실성 등) | | 60 | 60 | 45 | 30 |
| 관련 경력<br>(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) | | 15 | 15<br>(2년 이상) | 10<br>(1년~2년) | 5<br>(6개월~1년 미만) |
| 관련분야 최종학위 | | 15 | 15<br>(박사) | 10<br>(석사) | 5<br>(학사 이하) |
| 어학 | | 10 | 10<br>(토익 900, TEPS 766(New TEPS 430), 토플 105 이상) | 7<br>(토익 800, TEPS 637(New TEPS 348), 토플 91 이상) | 5<br>(토익 700, TEPS 556(New TEPS 301), 토플 80 이상) |
| 추가점수 | 장애인 및 저소득층 | 3 | 3<br>(해당자) | | |
| |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인증시험 합격자 | 3 | 3<br>(해당자) | | |
| | 국가유공자 | 10 | 10<br>(10% 대상자) | 5<br>(5% 대상자) | |

※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위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